

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상위 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(안 제4조의2)

(현행) 2021년 12월 31일

(개정) 2026년 12월 31일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-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완료('21.8.20.)

-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 중 “2021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2026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 의 존속기한은 <u>2021년 12월 31일</u> <u>까지</u> 로 한다.	제4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6년 12월 31일</u> -----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소 관 부 서		노인장애인과
입 안 자	과 장	황 은 채
	담 당	양 재 호
	담 당 자	김 영 광 (480-5153)